



환경부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2. 7. 21.(목) 12:00 (금요일 조간)	배포 일시	2022. 7. 20.(수) 17:00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책임자	과 장 이재영 (044-200-5310)
		담당자	사무관 최재용 (044-200-5315)

해양 국가보호종 나팔고둥, 정부 합동 보호대책 시행

- 식용 고둥류와 혼획·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계도 강화 -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최근 남해안 일부 지역에서 나팔고둥 등 국가보호종을 지역주민들이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혼획 및 유통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주민 홍보와 함께 현장 계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나팔고둥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이자, 해양수산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국가보호종*으로, 최대 성체의 크기는 30cm 정도이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고둥류 생물이다.
 - * 국가보호종 지정현황: 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보호생물(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수심 10~50m의 깊은 곳에 살고 있어 직접 보기 어려운 종이나 식용 고둥류*를 통발로 어획하는 과정에서 함께 잡히거나 형태가 유사한 고둥류와 섞여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 갈색띠매물고둥(솔뱅이, 뽕이소라), 소라(뽕소라), 타래고둥, 피뽕고둥(참소라), 흑고둥(깊은골물레고둥, 골뱅이) 등
- 특히, 나팔고둥은 바다의 해충으로 불리면서 해양생태계를 황폐화시키는 불가사리를 잡아먹는 거의 유일한 천적으로 알려져 생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해양생물이다.

	
	
나팔고둥 (<i>Charonia lampas</i>) ※ 패각에는 불규칙한 돌기들이 있으며, 석회질 부착물이 많이 부착된 경우 나팔고둥인지 여부 식별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수족관 내 소라와 섞여 있는 나팔고둥	 소라 (<i>Turbo cornutus</i>)

- 정부는 나팔고둥을 비롯해 해양, 연안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이자 해양보호생물인 남방방게(Ⅰ급), 흰발농게(Ⅱ급), 갯게(Ⅱ급), 붉은발말뚝게(Ⅱ급), 대추귀고둥(Ⅱ급), 기수갈고둥(Ⅱ급) 등의 포획 및 채취를 예방하기 위해 어촌계장·이장단 회의와 어업인 교육·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지역사회 스스로가 법정 보호대상 해양생물의 종류를 인식하고 홍보·전파하는 역할까지 수행하는 선순환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기수갈고둥 (II급) <i>Clithon retropictus</i>	대추귀고둥 (II급) <i>Ellobium chinense</i>	남방방게 (I급) <i>Pseudohelice subquadrata</i>
		
붉은발말뚝게 (II급) <i>Sesarmops intermedius</i>	갯게 (II급) <i>Chasmagnathus convexus</i>	흰발농게 (II급) <i>Austruca lactea</i>

- 특히, 주요 서식지역 주변에 홍보 입간판을 설치하고 어촌계, 수협, 식당가,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제도 활동을 이어간다.

- 한편, 정부는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 이후에도 국가보호종을 포획 및 유통하는 사례가 다시 발생하거나 고의성이 의심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해양보호생물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하거나 가공·유통·보관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죽인 경우 징역 5년 / 5백만원~5천만원 이하 벌금)

- 다만, 어업활동 시 혼획되는 경우 어업인 스스로 해당 개체를 방사하도록 유도하고, 고의적인 위법 사항이 의심되는 행위를 목격하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또는 해양경찰서(통합 신고전화 119)에 신고해 줄 것을 안내할 예정이다.

- 붙임 1. 나팔고등 종 정보.
2. 나팔고등과 형태가 유사한 주요 고등류.
3. 연안에 서식하는 주요 국가보호종과 비법정보호종
4. 관련 법령 및 위반시 처벌 조문.
5. 전국 해양경찰서 및 유역·(지방)환경청 연락처. 끝.

담당 부서 <총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책임자	과 장 박소영 (044-201-7245)
		담당자	서기관 최영희 (044-201-7242)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책임자	과 장 이재영 (044-200-5310)
		담당자	사무관 최재용 (044-200-5315)
	국립공원공단 해상해안보전실	책임자	실 장 정승준 (033-769-9380)
		담당자	계 장 김낙원 (033-769-9385)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생태보전실	책임자	실 장 김형준 (041-950-0860)
		담당자	선임연구원 조인영 (041-950-0863)

- ☐ (국명/학명) 나팔고둥(*Charonia lampas*)
- ☐ (분류체계) 연체동물문(Mollusca) - 복족강(Gastropoda) - 총알고둥목(Littorinimorpha) - Charoniidae과 - 나팔고둥속(*Charonia*)
- ☐ (보호종 지정현황) 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 해양보호생물
- ☐ (서식특성)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필리핀 등에 서식하며, 국내에서는 제주도 연안은 수심10~20m, 남해안 도서지역은 수심 30~50m 지점에서 주로 발견 된다. 불가사리를 주식으로 하는 육식성이며, 국내에서는 불가사리의 유일한 천적으로 매우 중요한 생태적 가치를 지닌다. 일부 지역에서는 “호랑가이”라는 별칭으로 불림.
- ☐ (형태특성) 우리나라 복족류(고둥류) 중에 가장 크며, 최대 30cm까지 성장한다. 몸은 원뿔 모양의 패각이 8층의 나선형을 이루고 있으며, 패각 입구 내면은 백색이고, 테두리 쪽으로 넓고 길쭉한 주름 위에 흑갈색 때가 안쪽을 향해 있다. 패각에는 불규칙한 돌기들이 있으며, 석회질 부착물이 많아 식별이 어려운 경우가 있음.



나팔고둥 (배면)

나팔고둥 (등면)

□ 포획·채취 등 법령위반 시 처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허가 없이 1)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2)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양생태계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허가 없이 1)포획·채취·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이식·가공·유통·보관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라(*Turbo cornut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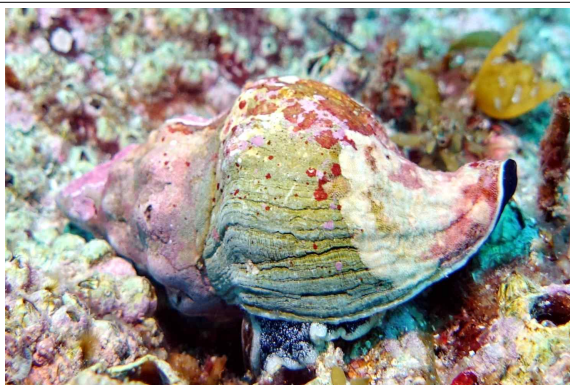
피뿔고둥(*Rapana venosa*)



각시수염고둥(*Monoplex parthenopeus*)



각시수염고둥(*Monoplex parthenopeus*)



매끈이고둥(*Kelletia lischkei*)



갈색띠매물고둥(*Neptunea cumingii*)

※ 지역명: 술뱅이, 뽕이소라

붙임3

연안에 서식하는 주요 국가보호종과 비법정보호종

○ 연안 습지(조간대) 서식 주요 법정보호종(멸종위기 야생생물, 해양보호생물)

		
기수갈고둥 (II급) <i>Clithon retropictus</i>	대추귀고둥 (II급) <i>Ellobium chinense</i>	남방방게 (I급) <i>Pseudohelice subquadrata</i>
		
붉은발말뚝게 (II급) <i>Sesarmops intermedius</i>	갯게 (II급) <i>Chasmagnathus convexus</i>	흰발농게 (II급) <i>Austruca lactea</i>

○ 법정보호종과 유사한 연안 습지(조간대) 서식 생물(非법정보호종)

		
눈알고둥 <i>Lunella correensis</i>	개울타리고둥 <i>Monodonta confusa</i>	갈고둥 <i>Nerita japonica</i>
		
무늬발게 <i>Hemigrapsus sanguineus</i>	도둑게 <i>Chiromantes haematocheir</i>	농게 <i>Tubuca arcuata</i>

법령명	금지 행위	위반시 벌칙	관련규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허가없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 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인 자	5년 이하의 징역 /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상습범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	법 제14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채취등의 금지) 법 제67조(벌칙)
	○ 허가없이 멸종위기 야생 생물 Ⅱ 급을 포획·채취· 훼손하거나 죽인 자 ○ 허가없이 멸종위기 야생 생물 Ⅰ 급을 가공·유통· 보관·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채취등을 위하여 폭발물, 땃, 창애, 울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14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채취등의 금지) 법 제68조(벌칙)
	허가없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 급을 가공·유통·보관·수출 ·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14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채취등의 금지) 법 제69조(벌칙)
	허가없이 해양보호생물을 포획 ·채취·훼손하는 경우, 또는 포획·훼손을 위한 폭발물·그물· 함정어구를 설치하거나 유독 물질·전류를 사용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20조(해양보호 생물의 포획·채취 등 금지) 법 제61조(벌칙)
해양 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허가없이 해양보호생물을 이식·가공·유통·보관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20조(해양보호 생물의 포획·채취 등 금지) 법 제62조(벌칙)

□ **해역별 해양경찰서 연락처**

※ 해양생물 및 해양오염 통합 신고번호 : **119**

권역	기 관 명	대표번호
중부	인천해양경찰서	032-650-2000
	평택해양경찰서	031-8046-2000
	태안해양경찰서	041-950-2000
	보령해양경찰서	041-402-2000
	서해5도특별경비단	032-835-3000
서해	군산해양경찰서	063-539-2000
	부안해양경찰서	063-928-2000
	목포해양경찰서	061-241-2000
	완도해양경찰서	061-550-2000
	여수해양경찰서	061-840-2000
남해	통영해양경찰서	055-647-2000
	창원해양경찰서	055-981-2000
	부산해양경찰서	051-664-2000
	울산해양경찰서	052-230-2000
	사천해양경찰서	055-830-2000
동해	포항해양경찰서	054-750-2000
	울진해양경찰서	054-502-2000
	동해해양경찰서	033-741-2000
	속초해양경찰서	033-634-2000
제주	제주해양경찰서	064-766-2000
	서귀포해양경찰서	064-793-2000

□ **해역별 유역(지방)환경청 연락처**

권역	기 관 명	대표번호
서해	한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031-790-2811
	금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042-865-0741
남해	영산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062-410-5226
	낙동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055-211-1631
동해	원주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033-760-6071
	대구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053-230-6451